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영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0

발의연월일: 2024. 6. 24.

발 의 자:권영세·김소희·주호영

박대출 • 구자근 • 이인선

안철수 · 강대식 · 한지아

고동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-19 이후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로 이륜차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가 급증하고 교통사고 발생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음. 또한 보행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, 최근 강화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단속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.

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에 대한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고 있음. 공익제보단 운영 이후 3년간 총 477,305건의 불법이륜차 공익신고가 시행되었고, 주요 공익신고 항목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36%감소하는 등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. 2023년 하반기부터는 신고대상을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차량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음.

그런데 공익제보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현재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익제 보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운영주체를 시·도 지사까지 확대 함으로써 이륜차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증진하고자 함(안 제57조의4 신설). 법률 제 호

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7조의4(공익제보단 운영)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익 신고한 자(이하 "공익제보단"이라 한다)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- 「도로교통법」 제5조, 제12조제3항, 제12조의2제3항, 제13조, 제15조제3항, 제17조제3항, 제18조, 제25조, 제25조의2, 제27조, 제28조제3항, 제50조제3항 및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0조제5항,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차동차를 운행한 자
- 2. 「도로교통법」 제25조, 제25조의2, 제27조 및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
- ② 공익제보단의 구성 및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57조의4(공익제보단 운영) ①
	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
	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
	하는 자를 공익 신고한 자(이
	하 "공익제보단"이라 한다)에
	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
	<u>있다.</u>
	<u>1. 「도로교통법」 제5조, 제12</u>
	조제3항, 제12조의2제3항, 제
	13조, 제15조제3항, 제17조제3
	항, 제18조, 제25조, 제25조의
	2, 제27조, 제28조제3항, 제50
	조제3항 및 「자동차관리법」
	제10조제5항, 제49조제1항을
	위반하여 이륜차동차를 운행
	<u>한 자</u>
	<u>2. 「도로교통법」 제25조, 제</u>
	<u>2</u> 5조의2, 제27조 및 제28조제
	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
	<u>행한 자</u>
	② 공익제보단의 구성 및 운영,
	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

통부령으로 정한다.